**수입화장품 국경 검사방법 해설**

| 조항 | 설명 |
| --- | --- |
| 제1조 본 방법은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하 본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 본 법 제14조 규정: '중앙관할기관은 수입화장품의 국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안전에 위해가 되는 화장품의 종류, 품목을 고시하며 샘플링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샘플링검사 방식, 방법, 항목, 범위, 기타사항은 중앙관할기관이 정한다.' 이를 본 방법의 제정 근거로서 명시하고 있다. |
| 제2조 본 방법의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 수입 허가 전에 수입화장품에 대한 국경에서의 샘플링검사를 말한다.
2. 시험: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감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검사 및 화학실험을 말한다.
3. 시험기관: 수입화장품을 시험하는 중앙관할기관 혹은 위탁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4. 신고의무자: 화장품 수입업자를 말한다.
 | 1. 본 방법의 용어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제2조의 '감각'은 후각, 시각, 촉각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
| 제3조 신고의무자가 본 법 제14조 제1항의 중앙관할기관이 고시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을 수입하기 전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 아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해 수입항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1. 수입신고서 사본
2. 검사기관이 지정한 기타 서류

상기 신청은 전자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제1항의 신청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혹은 회사, 상호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수입화장품 검사 신청기간, 대리방식 및 서류를 규정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 제4조 전 조항 제1항의 화장품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신청을 면제한다.1. 상호검사면제특혜에 의해 수출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증명서 구비
2. 중앙관할기관이 검사면제 특별 승인
 | 상호검사면제특혜 및 중앙관할기관이 특별 승인한 검사면제를 포함해 수입화장품의 검사면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 제5조 중앙관할기관은 수입화장품이 본 법 관련규정을 위반했는지 검사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본 법 제7조 및 제10조 제1항의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신고의무자는 제품 공급, 판매, 증정, 진열 혹은 소비자에게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 상기 미검사 품목이 본 법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 1. 수입화장품의 검사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2. 제품 공급, 판매, 증정, 진열 혹은 소비자에게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 본 법 제7조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 제6조 검사기관은 수입화장품 검사 시 제3조 제1항, 제3항의 서류, 자료 심사 외에 아래 방식 중 하나 혹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1. 현장검사: 제품 적재장소에서 품목을 확인하고 포장외관, 표시, 기타 관련 항목을 검사한다.
2. 로트 샘플링검사: 2~50%의 샘플링비율로 검사한다.
3. 로트별 검사: 각 로트의 수입화장품을 전수 검사한다.
 | 화장품의 수입검사 방식은 필요한 서류, 자료 심사 외에 다양한 샘플링비율로 확인, 검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 제7조 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샘플을 무상으로 획득해야 하며, 수량은 검사에 충분한 수로 제한한다. 샘플 채취 후 신고의무자에게 인도해야 한다.신고의무자는 상기 샘플 채취 시 샘플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 검사기관의 수입화장품 샘플 무상 획득 및 샘플링 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제8조 검사 및 샘플링은 제품 적재장소에서 실시한다. 제품이 컨테이너에 적재, 배송되는 경우 중앙검사구역 혹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관리처가 인가한 특정지역에서 실시해야 한다. | 수입화장품의 검사 및 샘플링 방식,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
| 제9조 제6조에 따라 획득한 샘플은 필요 시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샘플링 순서를 따른다. 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검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검사한 실험실에서 미리 검사해야 한다. | 수입화장품의 검사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
| 제10조 컨테이너 야적장에서의 샘플링이 어렵거나 검사 소요시간이 5일을 초과하거나, 화장품이 변질 혹은 안정성에 취약한 경우 검시기관은 약정서를 통한 신고의무자의 보관책임 명시 후 통관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사전허가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상기 사전허가 화장품에 대해 신고의무자가 약정한 보관장소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임의로 사용, 이동, 공급, 판매, 증정한 경우 검사기관은 이를 발견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의 사전허가 신청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 약정방식에 의한 수입화장품의 사전허가 조건 및 제한을 규정하고, 보관장소가 약정장소와 일치하지 않을 시 사전허가 신청의 잠정 중단 및 중단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 제11조 수입화장품이 검사 결과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신고의무자에게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검사기관에 서면허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고의무자는 허가증을 발급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샘플링목록에 따라 나머지 샘플을 채취해야 하며 기한 내에 채취하지 못하거나 샘플 성질상 장기보관에 부적합한 경우 검사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 | 허가증 발급 및 잔여 샘플 채취, 처리를 포함해 검사 합격 후 수입화장품의 후속 처리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
| 제12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은 신고의무자에게 수입불합격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신고의무자는 상기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해 검사기관에 재검 신청을 할 수 있다. 재검 시 검사기관은 최초 채취한 샘플 중 잔여 샘플을 대상으로 한다.검사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화장품의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잔여 샘플은 재검 신청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무자가 재검불합격통지서를 받은 후 폐기해야 한다. | 1. 불합격통지서 발급 및 재검, 재검 신청 요건을 포함해 불합격 수입화장품의 후속 처리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2. 제3항의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은 행정처벌법 제36조,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1 증거보전 상황을 말한다.
 |
| 제13조 수입화장품이 검사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검사기관은 샘플링검사 혹은 검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1. 본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검사기관에 일정기간 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동의하면 화장품 수입 후 시정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에 따라 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시정 신청이 거부되거나, 혹은 본 법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자가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상기 제품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허가된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1. 검사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화장품의 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2. 제1항의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은 행정처벌법 제36조,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1 증거보전 상황을 말한다.
 |
| 제14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신고의무자에게 기한 내에 불합격 원인, 개선계획, 예방조치 관련 문서 및 자료를 제출, 심사를 받도록 통지할 수 있다. 심사에 통과하기 전까지 동일한 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의 화장품에 대한 재검 신청을 받지 않는다.1. 동일한 신고의무자의 동일한 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의 화장품이 2회 로트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동일한 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의 화장품이 검사 불합격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3회 규정에 미달한 경우
 | 1. 수입화장품이 검사에 불합격하고 특정 상황에 있는 경우 검사기관이 신고의무자에게 개선계획 및 예방조치 등 후속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업체가 신고의무자를 변경해 위험관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 제15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조사, 원산지, 수출국의 검사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1. 전 조항의 통지기한 내에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심사결과 전 조항의 문서 및 자료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신고의무자가 제14조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 및 예방조치 등 문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검사기관은 위험관리를 위해 불합격 제품과 동일한 제조사, 원산지, 수출국의 수입검사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 제16조 본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국경 샘플링검사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1. 심사수수료: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에 따라 심사하는 비용
2. 현장검사수수료: 검사원이 현장에서 샘플 채취, 품목 확인, 포장 및 표시, 기타 관련 항목을 검사하는 비용
3. 연장작업수수료: 신고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연장검사작업을 신청한 데 따른 비용
4. 문서작업수수료: 수입화장품 허가통지서 재발급, 교체, 추가, 정정등록 비용
5. 검사수수료: 제품 로트별 검사 혹은 재검 비용

상기 제1항~제4항의 수수료 금액은 첨부된 표에 나와 있으며, 제5항은 식품의약품 화장품 검사 및 대조 표준품 공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 1. 각 검사수수료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2. 수입화장품의 샘플링검사는 화장품 수입 시 국경에서 실시하므로 검사비용에는 심사수수료, 현장검사수수료, 연장작업수수료, 문서작업수수료, 검사수수료가 포함된다.
 |
| 제17조 검사원은 본 방법에 따라 검사업무 수행 시 직무수행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본 법 제13조 제3항을 참고해 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 제18조 본 방법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 본 방법의 시행일자를 명시하고 있다. |

표

|  |  |
| --- | --- |
| 항목 | 수수료 금액(NT$) |
| 1. 심사수수료 | 심사수수료는 관세지급필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요율로 계산된다.1. 수입화장품의 심사수수료 요율은 2.5‰이다.
2. 심사수수료가 500위안 미만인 경우 품목당 500위안으로 계산하며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절반으로 계산한다.
 |
| 2. 현장검사수수료 | 1. 동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제품이 동일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동시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원당 500위안으로 계산한다.
2. 검사기관이 항만 내 창고, 야적장에 사무소를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제품이 동일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동시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원당 300위안으로 계산한다.
3. 사전허가 장소에서 샘플을 채취하거나 검사해야 하는 제품: 동일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제품이 동일 장소에 보관되어 있고 동시에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 검사원당 1,000위안으로 계산한다.
4. 당일 왕복이 불가능해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 행정원이 정한 국내 출장비 수수료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 3. 연장작업수수료 | 1. 검사기관은 아래 시간에 따라 연장작업수수료를 청구해야 한다.
2. 평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 혹은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1인당 400위안으로 계산한다.
3.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인당 1,000위안으로 계산한다.
4.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인당 2,000위안으로 계산한다.
5. 동일한 신고의무자의 작업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비용으로 계산한다.
 |
| 4. 문서작업수수료 | 건당 100위안으로 계산한다. |